



< 닥터페이 지정 업체 계약서 >

편의상 닥터페이 본사 이현규를 (갑)이라 칭하고 지역의 닥터페이 지정 업체를 (을)이라 칭하기로 한다. 양인은 상호 간 선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로 한다.

제1조: (갑)과 (을) 계약의 정의

제1항: (갑)과 (을)은 의료업계의 효율적인 경영과 빅데이터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문화를 열어가기 위해 제작한 닥터페이가 소명의식을 완수하는데 앞장서서 닥터 페이의 보급과 문화창달 책임을 다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2항: (을)은 닥터 페이 회원 고객이 방문하여 진료 또는 수술을 단행하였을 경우에 전체 진료비중 30%를 닥터페이로 결제 받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제3항: (갑)은 지정 병원 고객이 지불한 닥터페이를 의사와 병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의료기기 회사와 업무 시작 전 닥터페이 의료기기 구매결제 수단으로 사용할수 있는 준비를 마치기로 한다.

제2조: (갑)과 (을)의 의무

제1항: (을)은 지역에서 본사가 발행한 닥터페이를 취급하는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지원 업무를 이행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있거나 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지역의 지정업체로 닥터페이고객 또는 닥터페이 위임자가 방문하여 닥터페이를 결제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결제받는다

제3조: 닥터페이 결제업무처리기 설치 허용 및 협조

제1항: (을)은 지정 업체로서 당사의 회원이 본사의 결제수단 사용에 필요한 기기 또는 기존 사용중인 기기에 접촉을 시켜 호환될수 있도록 위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해야 하며 시설 기기를 장차해야할시에는 적극적으로 설치 허가 및 협조를 해야한다.

제2항: (갑)은 위 사용 가능한 기기를 설치 할 경우 (을)의 영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설치중 기기파손 또는 기존 병원시설 손괴를 입히지 않고 설치를 해야 하며 만약 병원내의 설치물들 손괴 파손할 경우 무조건 피해 보상에 임하고 원상복구를 시켜 주어야 한다

제4조: 업무상 기밀 누설 금지

제1항: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형성된 기밀, 또는 대외비, 등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중 필히 보안을 유지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에게 누출하거나 그와 같은 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명예 훼손 및 사기 윤리규정 위반금지

제1항: (갑)과 (을)은 닥터 코인지정업체일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위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



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여 개인과 회사또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법 위반 행위 당사자 처벌 원칙

제1항: (갑)과 (을) 양인은 본 사업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가 아닌 타권리. 또는 본사의 방침에서 벗어나 법을 위반하여 자행된 행위로 인해 법 소추를 받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법의를 자행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2항: 본 사업건과 관련하여 발생 되는 타자의 재산상 손해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갑)과 (을)은 상호 당사자 처벌 원칙에따라서 (갑)과 (을) 양인중 채무.변제해야할 손배 등 사건은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자동해지

제1항: (갑)과 (을)의 판매원 계약은 일차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갑)과 (을)이 협상하여 진행되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 또는 파기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활동이 전명 금지된 경우. 사건 사고 발생으로 법적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병고 사고로 인해 사망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이민등 국내에서 사업을 활동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는 의견을 경취하여 파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이중 계약금지

제1항: (갑)과 (을)은 본사업건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을 할수 없다

제9조: 계약의 효력발생

제1항: 본 계약서는 양인이 같은 시각에 서명 날인 한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 양인은 이와같이 상호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판매원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또는 양인이 계약을 위반한 문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당사자 관할 법원을 상대로 진의를 다투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후일을 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갑) 본사: 대표이사 이헌규

법인 번호:

통신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갑) 판매원: 대표 000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번호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